

상공자원부공고 (제1994-108호)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중 개정령 (안) 입법예고

석유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1. 1
상공자원부장관

1. 개정취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석유사업법령상의 석유사업기금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석유사업법령에 의한 기업활동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그간 석유사업법령 운영과정에서 문제된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석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령 제정에 따라 동법령에서 규정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관련 조항은 석유사업법령에서 삭제함.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사업법령상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징수금 용어를 수입금에서 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정부보유석유비축시설을 한국석유개발공사보유석유비축시설로 변경하며, 징수금 납부기관은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점 포함)으로

변경함.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금 징수에 있어 국제징수의 예에 준하여 동회계의 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부과금징수사무를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위탁하며, 부과금 체납시에는 가산금을 부과토록 함.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금의 징수 제외는 비축용석유, 외국에서 수입한 항공기·선박용 석유,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을 대상으로 함.

(5)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금의 환급은 수출한 경우, 공업용원료로 사용한 경우, 비축용석유로 판매한 경우,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중 부과금징수가 제외되는 석유제품을 생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함.

(6)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의 종류·질·용도·수입물량 및 수입가격을 참작하여 차등징수 할 수 있도록 함.

(7) 나프타를 대체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할 시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부과금의 징수를 유예

함.

(8) 정부비축 석유제품의 입차시 부과금 부과시 점은 입차시점으로 함.

(9) 판매시 부과금의 부과시점을 판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2개월이내로 완화함.

(10) 시·도지사간의 석유판매대리점 판매구역확장협의의 원활을 위하여 상공자원부가 지침을 마련토록 함.

(11) 수도권 석유일반대리점의 허가기준중 저장시설기준은 1,500kl 이상에서 1,000kl 이상으로 함

(12) 주유소의 허가기준중 시설기준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타이어 공기 주입시설을 추가하여 국민편의 및 에너지 소비절약을 도모토록 함.

(13) 과징금부과 대상행위와 과징금의 금액기준중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를 삭제하고,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한 경우,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차별적 거래행위를 한 때,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한 때, 합리적인 거래선택을 방해한 때,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한 때에는 최저 3백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석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아스팔트를 수출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입신고가 없이 가능토록 함.

(2) 석유정제업자의 중복된 석유수출입계획신고는 면제함.

(3) 석유판매업의 허가신청 및 신고시 경영자의 신원증명서 제출을 생략토록 함.

(4) 주유소허가신청서의 신청서에 휘발유 1호에 대한 공급계약서 사본,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명세와 타이어 공기주입시설명세를 포함토록 함.

(5) 석유판매업 신고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토록 함.

(6) 이동판매소의 신고절차를 명확히 함.

(7) 석유판매업 승계시의 승계신고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8) 석유판매업자가 공급계약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함.

(9) 나프타를 석유수출입계약승인 대상에서 제외함.

(10) 천연가스 수입계약중 1년 미만의 계약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함.

(11) 석유수출입 승인시의 수수료는 무료로 함.

(1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부과금의 납부·유예·제의 확인에 관한 서류는 1개의 서식으로 통일하고,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식은 전산처리가 가능토록 제정함.

(13) 법령위반시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상자의 형평에 맞도록 완화함.

(14) 휘발유 품질규격을 1호와 2호로 구분함.

(15) 석유수출입신고서, 석유수출입계획신고서, 석유수출입계획변경신고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서, 석유판매업변경신고서, 부과금확인서, 부과금영수증서의 서식을 보완함.

(16) 석유판매업 신고필증의 서식을 신설함.

(17) 시·도사리의 석유판매업소 관리현황에 관한 정기보고 서식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상공자원부장관(참조 : 석유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503-9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